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05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민규 • 이훈기

박지원 • 이광희 • 최민희

송옥주·김남희·문금주

김정호 • 박희승 • 정태호

이정문 · 임미애 · 맹성규

허성무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,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

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, 조직문화미적응,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,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,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.

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, 청

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(안 제58조제2호가목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. 다만,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8조(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	제58조(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		
격의 제한) 제40조에도 불구하	격의 제한)		
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			
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			
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			
로 본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	2		
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가.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	가.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		
위하여 이직한 경우	위하여 이직한 경우. 다만,		
	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		
	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		
	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		
	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		
	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		
	<u>것으로 본다.</u>		
나.・다. (생 략)	나.・다. (현행과 같음)		